간호학생 현장 실습 협약서

2026학년도 경산근로자건강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와 대구대학교 간호학과(이하 '학교'라 한다)는 간호학과 현장 실습에 관현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조 (목적) 본 실습 협약은 '기관'과 '학교'의 상호 간 실습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협약기간) 본 계약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작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 3조 (상호협의조정) 실습 인원, 기간, 부서 등 실습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학교'의 요청에 대하여 '기관'이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지며 협의된 일정에 따라 실습을 진행한다.

제 4조 (의무와 권리) '기관'과 '학교'는 간호학생 실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① '기관'은 간호학생의 현장 실습을 지도하며, 실습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학교'에 통보한다.

② '학교'는 학생의 현장 실습 기간 중 사고나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학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학교 행사 등으로 실습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기관'에 미리 통보한다.

④ '학교'의 학생은 '기관'에서 요구하는 면역력(결핵 포함)이 확보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학생과 그의 소속 학교가 진다.

제 5조 (배상) '학교'는 실습생의 부주의로 물품의 분실, 파손 등 재산 상 손해를 입힌 경우 '기관'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 6조 (기밀유지) '기관'과 '학교'는 실습 중 취득한 기관과 대상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계약 중이거나 종결 후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 7조 (안전관리) ‘학교’는 학생들의 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실습 중 재해나 사고를 입은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이 실습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조 (실습비) 실습비는 당해연도 실습생을 배치한 후 일정액을 지급하며, 일정액은 기관과 학교와의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 9조 (해석)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의 협약사항을 보증하고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을 작성하여 각각 1부씩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7월 31일

‘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

경산근로자건강센터장

‘학교’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50길 33

대구대학교 총장

간호학생 현장 실습 협약서

2026학년도 경산근로자건강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와 대구대학교 간호학과(이하 '학교'라 한다)는 간호학과 현장 실습에 관현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조 (목적) 본 실습 협약은 '기관'과 '학교'의 상호 간 실습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협약기간) 본 계약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작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 3조 (상호협의조정) 실습 인원, 기간, 부서 등 실습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학교'의 요청에 대하여 '기관'이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지며 협의된 일정에 따라 실습을 진행한다.

제 4조 (의무와 권리) '기관'과 '학교'는 간호학생 실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① '기관'은 간호학생의 현장 실습을 지도하며, 실습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학교'에 통보한다.

② '학교'는 학생의 현장 실습 기간 중 사고나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학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학교 행사 등으로 실습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기관'에 미리 통보한다.

④ '학교'의 학생은 '기관'에서 요구하는 면역력(결핵 포함)이 확보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학생과 그의 소속 학교가 진다.

제 5조 (배상) '학교'는 실습생의 부주의로 물품의 분실, 파손 등 재산 상 손해를 입힌 경우 '기관'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 6조 (기밀유지) '기관'과 '학교'는 실습 중 취득한 기관과 대상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계약 중이거나 종결 후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 7조 (안전관리) ‘학교’는 학생들의 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실습 중 재해나 사고를 입은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이 실습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조 (실습비) 실습비는 당해연도 실습생을 배치한 후 일정액을 지급하며, 일정액은 기관과 학교와의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 9조 (해석)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의 협약사항을 보증하고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을 작성하여 각각 1부씩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7월 31일

‘학교’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50길 33

대구대학교 총장

‘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

경산근로자건강센터장